

반성폭력은 '여전히' '시급한' 대학사회의 화두이다

대학에서 반성폭력은 더 이상 낯선 말은 아닌 듯 하다. 96년 연대항쟁 때의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을 계기로 대학사회 안에서 성폭력에 대한 문제제기¹⁾가 시작된 이후, 대학 여성운동 단위들은 대학 안에 존재하나 드러나지 않았던 성폭력을 가시화하고 담론화하는 활동을 계속해왔다. 연대 내에서의 반성폭력 운동은 크게 학생 간에 일어나는 성폭력과 교수 성폭력에 대한 문제제기, 그리고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반성폭력 학칙 제정운동, 새터 반성폭력 내규제정운동 등으로 이어져왔다.

대학의 일상생활 속의 성폭력에 대한 문제제기는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대학의 현실을 직시하는 작업이었다. 진보적인 공간으로서의 대학, 혹은 진리의 상아탑으로서의 대학이라는 허울 속에 은폐되어 왔던 대학 내 성폭력의 현실을 폭로하고 성폭력을 경험한 여성들이 직접 자신의 피해 경험을 드러냄으로써 막연히 '불편함' 혹은 '불쾌함'으로 각인되어 있던 자신의 경험을 성폭력으로 언어화함과 동시에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 결과 '성폭력'이라는 단어는 연세대 내에서도 더 이상 낯설지 않은 단어가 되었고, 성폭력이 소수 강간범의 문제가 아닌 일상에 만연한 문제라는 생각이 서서히 학내에 확산되어왔다.

그러나 과연 현재 연세대학교는 성폭력의 안전지대인가?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은 명백히 '아니오'이다. 실제 지난해 학내에서는 여러 건의 성폭력 사건이 신고되었으며, 신고된 성폭력 사건은 가해자의 반성없음 혹은 학교의 의지 없음으로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으며, 반성폭력 학칙은 학내 구성원들의 무관심 속에 그 부실함을 드러내고 있고, 새터 반성폭력 내규는 어느 정도의 효력과 함께 어느 정도의 회화화를 겪고 있는 것이 연세대학교 반성폭력의 현주소이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학내 구성원들 사이에는 반성폭력을 시급한 학내 문제로 인식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은 근본적으로는 여성 억압적인 현실이 워낙 일상적으로 만연해 있다보니 벌어지는 무감각함 때문이기도 하지만, 직접적으로 그 무감각함의 연장선에서, 아직도 성폭력을 단지 '사건'으로만 대하며 나와는 상관없는 문제로 취급하는 태도 때문에 빚어진다. 성폭력은 신문이나 뉴스에서 보도되는 강간이나 물리적 성추행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일상에서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는 폭력이다. 성폭력은 개인 대 개인의 문제나 개인의 도덕성의 부족으로 인해 빚어지는 일탈적인 범죄가 아니라 공동체 문화, 사회구조의 문제인 것이다. 일상생활 속의 성폭력에 대한 문제제기. 이것은 이제까지 말해지지 않았던, 육체를 둘러싼 권력관계를 드러냄과 동시에 가장 개인적인 우리의 일상이 바로 정치의 영역이라는-삶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요구하는 작업이다. 그리고 일상적인 성폭력에 대한 성찰은 굳이 '대학은 가장 진보적인 공간'이라는 관념적인 호명 때문이 아니더라도, 성별에 의한 차별과 폭력을 철폐해야 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인권의 문제로서 마땅히 대학사회의 화두가 되어야 한다.

1) 96년 8월 말 '연행된 여학우들이 성추행을 당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이 자세한 상황과 함께 컴퓨터 통신에 올라오면서 '한충련 사태' 연행과정에서 일어난 전경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공개되었다. 이 사건은 그 동안 가시화되지 않았던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의 문제를 수면 위로 드러내었고, 이 사건을 계기로 '학내 성폭력 근절과 여성권 확보를 위한 여성연대회의'(이하 여성연대회의)가 구성되었다

당장 무엇을 할 것인가

재차 말했듯이 우리의 일상은 이미 구조적으로 성별화 되어 있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개개인이 사소한 것처럼 여겨지는 자신의 생활을 예민하게 성찰하고 긴장하면서 기존의 성별화된 담론을 재구성 해나가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 이 작업은 2004년 한해의 활동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며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2004년 한해의 교육투쟁의 방향을 논의하는 이 자리에서는 성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학교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 당장 학교 측에 요구해야 할, 그러므로 학생들의 목소리를 모아야 할 부분이 어떤 지점들인지를 지적해 보려 한다.

1. 반성폭력 학칙 개정

현행 반성폭력 학칙은 학내 여성운동 단위들의 학칙제정 운동과 1997년부터 시행된 남녀차별 금지법에 따른 교육부의 권고가 맞물려 2000년 제정되었다. 이는 학교 당국이 학내 모든 구성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보호하고 학내에서 성을 매개로한 모든 폭력을 근절시킬 책임이 있다는 것을 명문화한 조치이다. 성폭력의 근절 뿐 만이 아니라 학교 구성원 모두의 동등한 교육권과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반성폭력 학칙은 꼭 필요하다. 그러나 원래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현재 반성폭력 학칙은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당장 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매우 간략히 요약해 보자면 아래의 4가지 부분들을 들 수 있다.

-반성폭력 학칙 적용범위의 문제

현행 학칙은 반성폭력 학칙의 적용범위를 '연세대학교 학칙의 적용을 받는 자'로 명시해 놓고 있다. 현재의 규정대로라면 성폭력 사건의 당사자가 사건 해결이 진행되는 중에 지위변동을 하게 될 경우, 사건 해결은 공중에 뜨게 된다. 몇 년이나 방치되다가 지난해 드디어 징계위원회가 꾸려졌던 사회복지학과 k교수 사건의 경우, 징계가 내려지기 전에 교수가 사직을 해버림으로써 가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징계는 결국 내려지지 못했다.²⁾ 이런식으로 사건이 흐지부지되는 사례는 가해자가 시간강사인 경우에도 전형적으로 발생하며³⁾, 학생 간 성폭력 사건의 해결 중 가해자가 졸업을 해버리는 경우도 있다. 교원의 경우 사표유보, 학생의 경우 졸업 유보 등 구성원의 지위변동이 학칙에 따른 사건 해결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명시하는 조항이 필요하다. 또한 가해자 피해자 일방만이 학칙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도 학칙에 따른 사건해결이 가능해야 한다.

-피해자 보호 조항 강화

성폭력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는 지속적으로 피해 경험을 상기해야 하고 자신의 피해사실을 타인에게 '설득해야만'할 것 같은, 혹은 실제로 해야하는 고통에 시달린다. 성폭력 해결 과정 자체가 2차가해가 되는 경우가 허다한 상황에서 피해자 보호는 아무리 강조

2) 특히 교수성폭력의 경우 가해자 교육을 포함한 징계가 중요한 것은, 가해 교수가 사건이 일어났던 학교에서는 사직을 하더라도 가해자 교육과 같은 충분한 반성의 계기없이, 징계기록도 없는 깨끗한 경력을 들고 다른 학교에 재임용되어 교육자 노릇을 계속할 수 있게되기 때문이다.

3) 실제 지난해 수업 중 성폭력적 발언을 일삼던 사학과 p강사가 사건이 신고되자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 신고 하겠다고 2차가해까지 가했지만, 수업 도중 강사직을 그만두어 사건이 해결되지 못한 사례가 있다.

해도 지나침이 없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우선은 가해자의 2차가해, 가해자 주변인의 2차가해에 대해서도 징계가 마련되어야 하며, 단지 피해자 보호의 원칙을 천명하는 수준이 아닌,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일정기간 접근금지 명령 등 피해자 보호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조치를 명시해야 한다.

-성폭력 대책위원회에 대한 '대책' 마련

성폭력대책위원회는 공식적으로 신고된 성폭력 사건의 해결이 논의되는 테이블이다. 그러나 사건을 해결해야 할 대책위 테이블에서 2차가해에 해당하는 발언⁴⁾들이 오갈 정도로 대책위의 성폭력 사건 해결 의지는 희박하다. 그러니 당장 대책위원들부터 사건 해결에 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하는 조항이 필요하다.

대책위에 피해자의 입장으로 성폭력 사건을 바라볼 수 있는 감수성을 담보시키는 방법으로 학생위원과 여성위원의 비율을 늘리는 것, 나아가 외부전문위원을 대책위원으로 참여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성폭력에 노출되기 쉬운 여성위원의 경우 성폭력을 피해자의 입장으로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학교 이미지 손상을 우려해 사건을 쉬쉬하며 덮어 두려는 교수위원들에 비해 학생위원은 사건해결에 적극적인 자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교수성폭력 사건의 경우 동료집단으로 뭉친 교수위원들이 사건을 축소하려 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학생위원 비율이 높아지는 것은 중요하다. 외부전문위원 참여에 관해서는 현재 학칙은 '전문위원을 참여시킬 수 있다'는 선택조항을 마련해 놓고 있지만, 선택사항이다 보니 실제 외부전문위원을 대책위에 참여시킨 경우는 한번도 없었다. 대책위에 피해자중심주의를 담보시키기 위해서는 외부전문위원참여가 의무화되어야 한다.

현행학칙은 피해자가 동의할 경우 사건 해결 결과를 공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피해자보호를 위해서는 성폭력 사건의 해결 결과를 공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대학내 반성폭력 운동에서 가해자 실명공개사과의 방식이 성폭력 사건 해결의 원칙으로 여겨져 온 이유는 성폭력 사건의 문제가 피해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에게 있다는 것을 명시하기 위함이며, 가해자 개인의 문제를 넘어 성폭력이 용인되는 문화 자체에 문제제기하기 위함이다. 또한 학내 반성폭력 학칙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고 있는 대다수의 구성원들에게 학칙에 의해서 성폭력 사건을 어떠한 방식으로 처리하였는가를 드러내는 것은 공개 그 자체로 매우 유효한 반성폭력운동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성폭력 대책위원회는 이 명시된 원칙을 지키고 있지 않으며 학칙에 규정되어 있는 의결의 절차 또한 회의 테이블에서 무시된 채 대책위원장이 독단으로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명시된 학칙조차 지키지 않는 대책위원들에 대한 징계조항이 따로 필요하다.

-성폭력 상담실과 예방교육

현재의 학칙에서는 여학생처에 상담실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여학생처장이 상담실장을 겸임하고 있다. 이로 인해 상담실은 업무를 진행하는데 있어 많은 제한을 받게 된다. 독립된 기관으로 존재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폭력 사건 해결시 외부의 압력을 받을 수 있으며 성폭력 사건 해결과 관련하여 타 기관에 특정한 요구를 하더라도 간과당하는 경우가 발생해 왔다. 그리고 여학생처의 업무가 과중한 때에는 '여학생처 소속' 상담실 역시 그 일을 함께

4) '방학이면 교환학생 온 여자애들이 벗고 다녀서 걱정이다'(웃음) '동성간 성폭력이라니 이건 병이나 정신이상 아니냐' '남자 집에 쫓아간 여자애도 문제가 많은 거 아니냐' 이상의 발언들은 모두 지난해 성폭력 대책위원회 회의 테이블에서 위원들의 입을 통해 나온 것이다.

말아해야 하기 때문에 상담실이 정말로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여학생처장이 상담실장을 겸임한다는 것은 실질적인 상담실장의 부재로 이어져 현재 상담실은 상담원 한분이 과중한 업무에 치여 독자적인 상담프로그램,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심리치료, 예방교육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성폭력 상담실이 그 이름에 걸맞는 내용을 가지려면 독립적인 지위확보와 함께 인력보충이 필요하다.** 더불어 현재 학칙에는 없는 상담원의 자격과 전문성에 대한 요건도 마련되어야 한다.

예방교육에 관해서는 현재 학칙은 그저 ‘연1회 이상의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라는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 교육 담당 기관이나 교육내용, 교육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두고 있지 않다. 그렇다 보니 이 조항은 명시만 되어 있을 뿐, 실질적으로 교원이나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예방교육은 제대로 실시되고 있지 않다. **성폭력 예방교육을 상담실에서 안정적으로 전달, 공급하도록 구체적인 실시규정이 필요하다.**

지난 해 ‘반성폭력 학칙 개정과 개선을 위한 공청회’로 학칙 개정이 건의된 이후 성폭력 대책위원회에는 반성폭력 학칙 개정이 논의 되고 있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교육투쟁과 흐지부지 마무리되어왔던 성폭력 사건의 해결에서 확인해 왔듯이 학교 측은 학칙 개정에 있어서도 별 의지를 보여주고 있지 않다. 학생들의 강력한 요구로 학교 측에 학칙 개정의 의지를 강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2. 강의 평가서에 교수의 성폭력적 언행에 대한 평가 항목 추가

성폭력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상대방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언어적, 비언어적 유형의 모든 행위”를 뜻한다. 이를 염두에 둘 때, 강의실 역시 교수 성폭력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공간임은 명백하다. 그간 외모지상주의나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 입각한 여성 폄하 발언,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발언, 성폭력이나 성매매 등에 대한 성인지적 시각이 결여된 발언들이 “수업의 분위기를 좋게 하거나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는 미명 아래 교수들로부터 자행되어왔다. 이렇게 수업 중 일어나는 성폭력과 그를 용인하는 강의실 문화를 불쾌하게 여기는 학생이 있다 하더라도, 그에 저항하고 문제제기할 수 있는 적절한 장치가 마련되어있지 않으므로 특히 성폭력적 발언의 대상이 되는 여학생들은 각종 수업들에서 많은 불편을 감내해야만 했고, 궁극적으로 수업 자체로부터 괴리되는 피해를 겪어왔다. 평등한 학습권을 보장하는 것은 여학생들로 하여금 성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수업을 안심하고 수강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학생들은 마땅히 강의 평가서와 같은 수단을 통해 해당 수업과 담당 교수의 성폭력적 언행에 대해 평가하고 경고할 권리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교수의 성폭력적 언행과 관련한 평가항목이 필수적인 의무조항으로 들어가야 할 것이다. 또한 강의 평가서를 통하여 수집된 의견들은 다음 강의 개설시 해당 교수에게 적극 반영됨으로써, 강의실 내 성폭력 예방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3. 적극적인 여교수 임용

2003년에 조사된 전임 교원 성별 현황에 의하면, 여성 전임 교원의 비율은 치대, 의대, 간호대를 제외한 전체 비율 중 10%를 간신히 넘는 정도에 불과하며, 그나마 학과 커리큘럼상 여성교수가 많은 생과대와 음대를 제쳐둔다면 5%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다. 학부 여학생

비율이 현재 40%에 육박하고, 석사와 박사과정에 있는 여학생 비율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원 성별 비율만 이처럼 불평등의 극치를 달리고 있다는 점은 충분히 문제제기할 만 하다. 이러한 인식에서 출발하여 2003년 교육투쟁 협약서에는 단대별 여성교수 비율을 20%이상으로 할 것이 명시되어 있지만 결국 시행되지 않았다. 2003년 법대 신입 교수 채용 시 충분한 자질을 바탕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성 지원자들이 겪었던 부당한 탈락과, 최근 일어났던 독문과 사태에서도 보여진 현직 교수들의 편파적인 평가 등의 문제는 교수 임용 시 성별, 나이, 학벌 등의 비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하려는 폐쇄적인 교수 집단 및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 들지 않는 학교 당국의 안일한 자세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 객관적으로 판단하기에도 무리가 없는 업적과 자질을 갖춘 여성 지원자들을 채용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성차별적 이데올로기의 산물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대학 사회 내 성인지적 관점이 부재할 뿐만 아니라 성차별적 공동체 문화가 지속되고 있음을 전적으로 입증한다.

이와 같은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학교는 신입 여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교수 채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모호하게 20% 이상 규정을 마련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성교수가 한명도 없는 단대는 다음 임용부터 여성교수를 우선 임용한다든지, 적극적인 여성할당제를 도입하는 등 구체적인 시행방향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신입 교수 채용 과정에 있어 현직 교수들의 부당한 성차별적 관점이 개입되지 않도록 채용 과정의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학교 당국이 사실 확인과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이다.

4. 교수성폭력의 심각성 인식과 적극적 해결

상대방의 동의 없이 언어적·비언어적 행동으로 상대방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일컫는 성폭력은 교수-학생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니다. 교수성폭력은 강의실, 실험실, 연구실 등 도처에서 일어나지만, 교수와 학생이 위계 질서에 놓인 상황은 교수로 하여금 학생에 대해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하고 반대로 학생은 교수에 저항할 수 없게 만드는 구조를 양산한다. 교수는 수업이나 논문 등 치명적인 것들을 볼모로 하여 학생을 저항이 불가능한 일방적인 성폭력 피해자로 만들고 그/녀의 목소리를 차단하는 한편, 교수 집단과 학교 당국은 “학교의 명예” 또는 교권 등의 미명 하에 성폭력 사실을 무마시키고 가해 교수를 감싸거나 피해 학생을 “원인 제공자”로 몰아세우는 등 2차 가해를 자행하는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낸다. 이러한 교수성폭력은 학생의 성적 자율권 및 학습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이자 대학 내 성폭력 구조를 공고히 하는데 일조하는 더없이 효과적인 기제로 작용한다.

따라서 교수성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교는 현재 실질적으로 전혀 진행되지 않는 교수 성폭력 예방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교수들이 이에 협조적으로 응할 수 있게 하는 합리적인 대응책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피해자 보호 및 가해 교수 징계와 관련하여 학교 당국은 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성역으로 일컬어지는 가부장적 교수 사회에 대해 가지고 있던 안일한 자세를 탈피하여 학칙 개정 등 지속적인 감시 활동 개진 및 대책 마련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